

1. 제정이유

해양재난의 경우 「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앙구조본부의 장,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해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부여하도록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867호, 2025. 4. 1. 공포, 10. 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해양재난 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의 구성(안 제3조)
- 나. 긴급구조활동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(안 제4조)
- 다. 긴급구조활동 평가 방법 등 규정(안 제5조)
- 라. 긴급구조활동 평가 결과의 보고 및 통보(안 제6조)
- 마. 긴급구조활동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(안 제7조)
- 바. 재난대응 우수 또는 미흡 대응자 통보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,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특이 사항 없음

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의 구성) ①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,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(이하 “구조본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해야 한다.

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평가단의 단장은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,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구조본부의 각 부장. 다만,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중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,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·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 관련 업무 분야에
서 5년 이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단장이 필요하
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자료 제출요청 등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
“영”이라 한다) 제62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의 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
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. 이 경우
요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-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구조지원
기관의 장과 관계인의 출석·의견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실시) ① 평가단의 단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관련자료와 대응기
간동안 구조본부에서 작성한 각종 서류·동영상 및 사진, 긴급구조활동에
참여한 기관·단체 책임자들과의 면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활동에 대
한 평가를 실시한다.

- ②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
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.

- 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
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제6조(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) 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서 정하
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, 지역구조본부의 장 및 광
역구조본부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상급 구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- ② 구조본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
수 있다. 다만,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거나 개선·보완할 중

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)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 및 대응체제의 개선, 예산의 우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8조(우수 또는 미흡 대응자 통보) 구조본부의 장은 평가 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1.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 종사자 현황
2.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현황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,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3조(긴급구조활동 평가단의 구성) ①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의 장,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(이하 “구조본부의 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평가단(이하</u>

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해야 한다.

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평가단의 단장은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고,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조본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구조본부의 각 부장. 다만,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 소속 요원 중 5급 상당 이상의 직급에 있거나,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

2.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한 기관
· 단체의 요원 또는 평가 관련 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

<신 설>

<신 설>

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
사람으로서 단장이 필요하
고 인정하는 사람

제4조(자료 제출요청 등) ① 「재
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
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2
조제3항에 따라 평가단의 단장
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
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
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. 이 경
우 요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에
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와 관련
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
급구조지원기관의 장과 관계인
의 출석·의견진술 및 자료 제
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실시) ① 평가단의 단
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한 관련자
료와 대응기간동안 구조본부에
서 작성한 각종 서류·동영상
및 사진, 긴급구조활동에 참여
한 기관·단체 책임자들과의 면

<신 설>

담 자료 등을 근거로 긴급구조
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

②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
기관에 대한 평가는 영 제62조
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
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평
가표에 따라 실시한다.

③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평
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
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제6조(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)

① 평가단은 긴급구조대응계획
에서 정하는 평가결과보고서를
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,, 지역
구조본부의 장 및 광역구조본부
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상급 구
조본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
다.

② 구조본부의 장은 긴급구조활
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평가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
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다만,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시
정이 필요하거나 개선·보완할
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
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(평가결과에 따른 조치) 긴
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구조본
부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의
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
에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제도
및 대응체제의 개선, 예산의 우
선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
해야 한다.

제8조(우수 또는 미흡 대응자 통
보) 구조본부의 장은 평가 결과
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
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1. 우수 재난대응관리자 또는
종사자 현황
2. 재난대응을 하지 아니하거나
부적절하게 대응한 관리자
또는 종사자의 현황

부 칙

<신 설>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

시행한다.